

## 붙임5

##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

### □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 기준

가.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적용한다.

나.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채용시험 전형단계(서류전형, 필기전형, 면접전형 등)별로 가점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하여야 한다. 다만,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전 과목에 대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.

다. 위 '나'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(이하 '가점 합격자'라 한다)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.

#### 세부 적용 기준

1. 전형단계별 가점합격자는 전형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%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합격한 사람은 가점합격자에서 제외한다.
2.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'1'에 따른 가점합격인원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①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
  - ②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의 경우
3. 최종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때에는 모든 전형단계에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, 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. 단, 응시자수가 최종 채용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최종 채용예정인원	응시자 수	가점합격자	가점합격인원 상한제
3명 이하	최종 채용예정인원보다 많음	전형단계별 미발생	미적용
	최종 채용예정인원보다 동일하거나 적음	전형단계별 발생	미적용

라.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. 만약 취업지원대상자 사이에 동점자가 발생하여 가점합격자 상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, 평가원 채용 관련 규정 중 '동점자 처리기준' 등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한다.